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1995. 10. 10

교육사회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 출 자 : 충청북도 교육감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5년 9월 30일

○ 회부일자 : 1995년 9월 30일

다. 상 정 일 자 : 제11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95. 10. 10)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담당관 김 진 성)

가. 제 안 이 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1995. 7. 1대통령령 제14,703호)의 개정으로,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위원회에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액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 요 골 자

○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함.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고 교육위원의 회기중 회의(소위원회 회의 포함) 출석한 경우에 한해 1일 60,000원을 지급토록 함

○ 여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토록 함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영 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바,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의 개정으로 이를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규정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 "충청북도교육위원회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로 조례제명을 개정하고

○ 그 내용에 있어

- 교육위원의 의정활동비를 신설하여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월 5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100,000원을 매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토록 하며
-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여 교육위원이 회기중 회의(소위원회 회의 포함)에 출석한 경우에 한해 1일에 60,000원을 지급토록 하며
- 여비는 교육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만 지급토록 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가. 질 의

교육위원이 활동하는 것을 의정활동으로 보는가 ?

나. 답변요지 (답변자:행정관리담당관, 관리국장)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19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의 개정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함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의 준용 내용에
명기되어 있지 아니하여 어려움이 있음.

굳이 설명드린다면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별법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두게 되었으
므로 대의기관으로써 의정활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것임

참고로 교육부 예산편성지침에도 의정활동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 드림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경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조 례 안 : 별 첨